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의안 번호	6284
----------	------

제출년월일 : 2022. 4.

제안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2022. 1.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 1. 1.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등의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제1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써 규약 개정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2022년 1월부터 2단계 재정분권 합의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됨. (안 제1조, 안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16조)
-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라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변경함. (안 제5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제8호, 안 제8조제1항제5호,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28조)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른 관련 부처 및 인원수 변경을 반영함. (안 제6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8조제3항)

라.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신설(안 제27조부터 제35조 까지 신설)

3. 규약 개정 절차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개정 절차

- ① 조합회의 안건상정 및 의결 (규약 제2장의 제8조제1항제1호)
- ② 시·도 의회의 심의·의결 (각 시·도)
-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64조1항, 행정안전부)

《 세부사항 》

【안건상정】 → 【조합회의 의결】 → 【안건확정】 → 【시·도 통지】 → 【시·도 의회 승인】 → 【조합에 통지】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의안확정】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 제16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7조, 제21조~제2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12조, 제20조~제25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규약개정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제6조제2항 중 “20인”을 “23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발전기금 업무”를 “기금총괄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을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장 각 1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재정전문가 2인”을 “지방재정, 균형발전 전문가 각 2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담당 과장 또는 재정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 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각 기금업무 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 담당 과장으로 기금별로 실무협의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3항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제28조”를 “제37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제28조”를 “제37조”로 하고,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의 관리 운용·총칙”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발전기금”을 “기금”으로,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중 “발전기금”을 “기금”으로,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중 발전기금”으로 하고, “구분한다.”를 “구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17조 제목 중 “발전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 수립”으로, 같은 조 제1항, 제4항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3인”을 “5인”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재정지원계정 운용”을 “발전기금 운용”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융자관리계정 운용”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으로 한다.

제6장에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자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제30조(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광역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광역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31조(광역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 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2조(광역지원계정심의회)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기초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34조(기초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 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5조(기초지원계정심의회) ①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를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법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분석 결과와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를 제37조로 하고,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하며, 단서 중 “법 제17조제6항”을 “법 제17조제6항 및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용”을 “보칙”으로 하고, 제8장을 삭제한다.

제29조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를 제3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법률 제18545호(2021. 12. 7)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 (목 적)</p> <p>-----</p> <p>-----</p> <p>-----</p> <p>-----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p> <p>)-----</p> <p>-----</p> <p>-----.</p>
<p>제5조(조합의 사무) ① (생략)</p> <p>1.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p> <p>2. ~ 4. (생략)</p> <p><신설></p>	<p>제5조(조합의 사무) ① (현행과 같음)</p> <p>1.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p> <p>-----.</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p>

<p>5.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p>	<p>6.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p>
<p>6. (생략)</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7.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위탁 사무</p>	<p>8.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 -----.</p>
<p>8.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지방 자치단체 제공</p>	<p>9.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 ----- -----.</p>
<p>9. ~ 11. (생략)</p>	<p>10. ~ 12. (현행 제9호부터 제1 1호까지와 같음)</p>
<p>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 략)</p>	<p>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현행 과 같음)</p>
<p>②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② -----23인----- -----.</p>
<p>1.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 장으로 한다)</p>	<p>1. -----기금총괄 업무를 ----- 기금총괄 업무----- -----.</p>
<p>2.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을 담 당하는 국장</p>	<p>2. -----지방재정, 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국장 각 1인.</p>
<p>3.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인</p>	<p>3. ----- 지방재정, 균형발전 전문가 각</p>

있다.

② (생략)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4조(사무기구) ① (생략)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장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제15조 (발전기금의 회계년도) 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사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7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집

-----.

② (현행과 같음)

③ -----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제14조(사무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37조-----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기금의 관리·운용 총칙

제15조 (기금의 회계년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제16조 (기금의 계정 구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중 발전기금-----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

행) ①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
서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결산)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인 이
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
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지원계정 운용

제6장 용자관리계정 운용

<신설>

행) ①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조합이 관리하는 기
금의 기금-----.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
금

-----.

제18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5인-----

-----.

제5장 발전기금 운용

제6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제27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
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자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

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

<신 설>

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제30조(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광역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광역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신 설>

제31조(광역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신 설>

사용용도)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2조(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

<신 설>

른 잉여금 중 기초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34조(기초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신 설>

제35조(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①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제27조(성과분석) ① 조합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28조(사무위탁)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용

제8장 보칙

제29조 ①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사항 외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성과분석) ① ----- 법 제21조 및 법 제28조-----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현행 ③호와 같음)

제37조(사무위탁) -----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법 제17조제6항 및 법 제22조제3항-----

제7장 보칙

<삭제>

제38조 ① -----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

<p>② (생략)</p> <p>제30조 (생략)</p> <p>부칙</p> <p><신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9조 (현행 제30조와 같음)</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법률 제18545호(2021. 12. 7)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p>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융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융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 융자에 대한 결산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전문기관) ① 법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② 조합이 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 경우 10명 중 4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군·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 경우 10명 중 4명은 제1항제2호 후단의 추천권자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자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는 “시·도 및 시·군·구”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의 적합성
2. 지역의 주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과의 관계
4. 사업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6.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7.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협약 기간
2. 사업의 주관부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역할
3. 사업의 투자 분담
4.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5.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6. 그 밖에 공동투자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

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 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나 체결 전에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